

# 복지이슈 FOCUS

현상공감 경기복지재단

제02호  
2022-02

2022. 3.

## 경기도 G-푸드드림 사업 인증제 도입 가능성

유정원 연구위원 (voiced@ggwf.or.kr)  
강보민 연구원 (kbom@ggwf.or.kr)

### 목차

- I. G-푸드드림 사업운영 구조
- II.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현황
- III. 인증제도의 개요와 사례
- IV. 경기도 사업장 인증 가능성은?



경기복지재단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연구진

연구책임 |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강보민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 복지이슈 FOCUS는 빠른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요현안 및 이슈를 발굴하기 위하여 복지 이슈를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3 Fax : 031-898-5935 E-mail : [voiced@ggwf.or.kr](mailto:voiced@ggwf.or.kr)

### ■ 기부식품 제공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지원

-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서비스 정책과 관할로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나 광범위 단위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자체에 신고·운영됨

### ■ 경기도는 G-푸드드림 사업으로 푸드뱅크 및 마켓 활성화 도모

- G-푸드드림 사업 대상 사업장에는 전담인력 외 푸드코디네이터 인력을 배치하여 기부처(자)의 체계적 발굴 및 관리와 기부식품 등의 효율적 배분 등 역할을 부여
  - 도내에서 만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당연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조건으로는 매주 3회 이상, 매주 60명 이상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장이 대상이 됨

### ■ 사업장 수 증가 조절과 보건복지부의 평가 결과활용 등 개선과제 존재

- 경기도 내 도비·시군비 매칭을 통해 G-푸드드림 푸드코디네이터의 인건비를 제공받는 사업장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사업장 평가를 실시, 2022년에도 준비하고 있으나 그 결과 활용에 대한 방안은 부족해 보임
- 시·군별 지도·점검은 관할 사업장의 관리까지 여력이 못 미치는 형편으로 광역지원센터와 협조하여 이에 대응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 경기도 기초사업장 지원 및 관리 방안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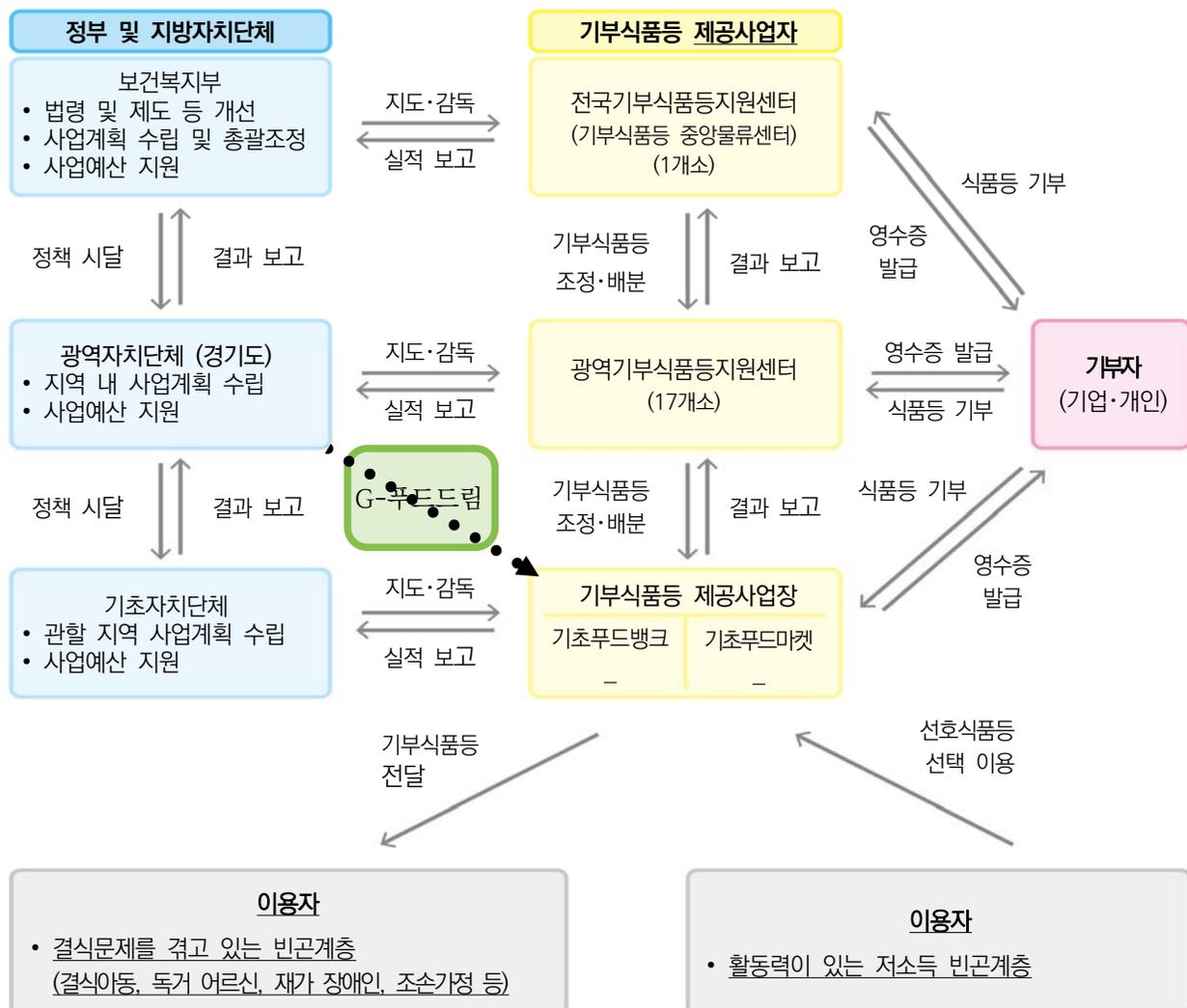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의 핵심적 영역과 기초사업장 대상 광역지원센터 점검지표가 접목된 형태의 인증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경기도 전체 사업장에 다양한 정보수집을 통해 운영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경기도와 시·군에서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계획수립 필요
- 광역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에 기초사업장 관리실적으로 인증 등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자구적 노력과 연계되는 지표 추가를 제안함

## I G-푸드드림 사업 운영구조

### ■ 기부식품 제공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지원

-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은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서비스정책과 관할로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나 광범위 단위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자체에 신고·운영됨
- 전국 푸드뱅크 운영주체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보건복지부에 의해 위탁받아 운영하고 경기도 역시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 지정·운영 중이며 시군 내 기초사업장(푸드뱅크, 푸드마켓 등)을 지원함

〈그림 1〉 기부식품사업 추진체계



\*출처 : 보건복지부(2021), 2021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안내

## ■ 경기도는 G-푸드드림 사업으로 푸드뱅크 및 마켓 활성화 도모

- G-푸드드림 사업 대상 사업장에는 전담인력 외 푸드코디네이터 인력을 배치하여 기부처(자)의 체계적 발굴 및 관리와 기부식품등의 효율적 배분 등 역할을 부여
  - 도내에서 만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당연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조건으로는 매주 3회 이상, 매주 60명 이상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 시설·인력 기준을 미충족하는 등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푸드코디네이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주요 업무는 ①기부처 개발 및 전담인력 업무(FMS,차량운행 등) 보조 ②긴급 생계지원 대상자 지원 및 연계 ③기부식품 배분 업무 공유 등임
- 최근에는 「경기먹거리그냥드림 코너운영」<sup>1</sup>을 추진하여 코로나-19 생계형 범죄 예방을 진행하고 있음

## ■ 사업장 수 증가 조절과 보건복지부의 평가 결과 활용 등 개선과제 존재

- 경기도 내 도비·시군비 매칭을 통해 G-푸드드림 푸드코디네이터의 인건비를 제공 받는 사업장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조건을 갖추어 지자체에 신고 후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보조금 지원 형평성 등을 들어 균일한 지원을 기대함
  -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사업장 수는 시·군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기준을 충족하면 인건비를 제공받는 대상이 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남
-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사업장 평가를 실시, 2022년에도 준비하고 있으나 그 결과 활용에 대한 방안은 부족해 보임
  - 경기도와 기초지자체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사업장 운영에 대해 전국 단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결과 활용을 통한 서비스 개선에는 실효성이 부족함
  - 시군의 지도·점검과 구별되는 평가의 결과활용성을 재고함과 동시에 재정투입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식품 제공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방식 필요
  - 사회복지 분야의 인증제를 검토하여 G-푸드드림 사업에 적절할지 검토해 보고자 함

1 복지관 등에 식품제공 코너를 마련하고 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력을 배치, 인건비를 제공하는 도비 100% 사업

## II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현황

### ■ 경기도 기부식품등 사업장은 관련 법률과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지원

- 사업지원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sup>2</sup>」과 「경기도 기부식품 활성화에 관한 조례<sup>3</sup>」에 따라 경기도 복지국에서 관할하고 있음
  - 제3조(신고)①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
- 도비 지원비중은 G-푸드드림 사업에 시·군과 매칭에도 불구하고 비용 투입의 단위가 가장 크며 사업장 수가 증가하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구조임
  - 신고제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장의 성격상 시·군에서 사업장의 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하지 않음
    - 도와 시·군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적절한 사용과 전문성 제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는 이를 강조하는 지침을 작성하여 배부한 바 있음<sup>4</sup>

〈표 1〉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량	예산규모			비 고
		계	도 비	시 군 비	
합 계		3,325,800	1,412,760	1,913,040	
경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지원	1개소	152,000	152,000	-	도비 100%
경기남부물류창고 운영지원	1개소	293,000	293,000	-	도비 100%
경기북부물류창고 운영지원	1개소	131,000	131,000	-	도비 100%
G-푸드드림	64개소	2,466,000	739,800	1,726,200	도30%, 시군70%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종사자 처우개선비	127명	76,200	76,200	-	도비 100%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장비 지원	11개소	207,600	20,760	186,840	도10%, 시군90%
<b>총 사업비 : 3,325,800천원 (도비 1,412,760천원, 시군비 1,913,040천원),</b>					

\*자료 : 경기도 2022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추진계획 참고

2 2006년 9월 시행된 「기부식품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 복지의 증진과 공동체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함

3 2012년 1월 5일 제정

4 경기복지재단(2019), 경기도 기부식품사업 평가결과 분석 및 발전방안 참고

○ 시군별로 최소 1개소에서 최대 8개소의 사업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음

- 경기도 북부에 총 22개소(푸드뱅크 17, 푸드마켓 5), 남부에 65개소(푸드뱅크 54, 푸드마켓 11)가 운영되고 있음
- 주로 북부 시군에는 1~2개소가 신고 운영 중에 있으며, 남부에는 화성시가 8개소로 가장 많은 수를 운영 중에 있음
- 31개 시·군에 모두 배치되어 있으나 시 또는 군내의 모든 기관에 배치된 것은 아님
  - 수원시의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5개소이나 2개소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 많은 기관의 사업을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표 2〉 시군별 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구분	푸드뱅크	푸드마켓	G-푸드드림 사업	구분	푸드뱅크	푸드마켓	G-푸드드림 사업
총계(87)	71	16	64				
수원시(5)	4	1	2	오산시(1)	1		1
성남시(4)	3	1	4	하남시(1)	1		1
부천시(4)	3	1	2	의왕시(1)	1		1
용인시(5)	5		5	여주시(3)	3		3
안산시(3)	3		3	양평군(2)	2		1
안양시(4)	3	1	3	고양시(5)	4	1	4
평택시(5)	3	2	2	남양주시(3)	2	1	3
시흥시(2)	1	1	1	의정부시(2)	1	1	2
화성시(8)	6	2	1	파주시(3)	2	1	3
광명시(1)		1	1	양주시(2)	1	1	2
군포시(1)	1		1	구리시(2)	2		1
광주시(3)	3		3	포천시(2)	2		1
김포시(3)	3		1	동두천시(1)	1		1
이천시(5)	4	1	5	가평군(1)	1		1
안성시(4)	4		4	연천군(1)	1		1
			38				26

\*출처 : 경기도 2022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추진계획 참고

## ■ 기부식품 사업장 증가에 비하여 수혜자는 감소 추세

- 연도별 기초사업장 수는 2015년 69개소에서 2021년 87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G-푸드드림 사업 대상기관 또한 56개소에서 64개소까지 확대되었음
  - 경기도에 신고·운영되고 있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이 전국의 약 19%에 해당되고 사업장 수가 늘어나는 만큼 보조금으로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 또한 많아지고 있음
- 반면 이용자 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개인과 시설·단체 모두 증가하였으나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거의 비슷한 수를 유지하거나 소수 줄어드는 양상을 보임
  - 상대적으로 기부물품 접수 총액은 192억 원 단위에서 612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며 물품 제공 총액은 약 491억 원에서 587억 원 정도의 증가 폭을 보였음
  - 그러나 수혜자 수는 2017년 52,307명에서 2021년 51,292명으로 소폭 줄었으며 시설 및 단체도 1,873개소에서 1,831개소로 감소하였음
  - 이에 비해 G-푸드드림 사업 대상 사업장 수는 56개소에서 64개소로 12.5%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3〉 경기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현황

연도	푸드뱅크·마켓	G-푸드드림	기부물품 접수총액	기부물품 제공총액	수혜자		비고
					개 인	시설·단체	
2021	87개소	64개소	612억원	587억원	51,292명	1,831개소	'21년 12월 기준
2020	94개소		497억원	529억원	57,309명	2,284개소	
2019	90개소		505억원	522억원	51,304명	1,918개소	
2018	82개소		444억원	490억원	51,411명	1,846개소	
2017	78개소		419억원	456억원	52,307명	1,873개소	
2016	75개소		208억원	510억원			
2015	69개소	56개소	192억원	491억원			

\*자료 : 경기도 자료, 경기복지재단(2019) 보고서 참고

- 신고기준을 포함한 법적 기준의 충족 여부, 운영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가 필요함

## ■ 경기도 차원의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지원과 관리의 당위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의 활성화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음<sup>5</sup>
  - 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내 사업을 추진하고, 활성화를 위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지방비 등을 확보하여 인건비, 운영 장비, 공공요금·차량 유지비 등 경비 지원
    - 지원센터 및 신고사업자를 지원하고 사업실적 등 평가를 통하여 계속 또는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
- 법<sup>6</sup> 제9조2(사업장에 대한 평가)는 국가의 평가 실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경기도 조례에도 지원과 관리의 방안으로 평가와 지도·감독의 권한을 제시함
  -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식품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가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시설·장비·인력 등의 안전관리 수준과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확보 수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음
  -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및 사업자의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
- 연도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에는 제공사업 투명성 확보 및 식품 등 안전관리의 의무를 지자체와 광역지원센터에 부여함
  - 지자체와 광역지원센터는 신고한 사업자의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 비치,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 작성·보관 및 기부식품등의 모집·제공결과 공개 여부, 식품 유통기한 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 이행
- 따라서 국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그리고 광역지자체의 지원센터 등은 기부식품제공에 필요한 지원과 관리에 책임을 모두 함께 지고 있는 것임
  -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지자체로 공유하고 있음
  - 그러나 기본적인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업장들에 대한 관리를 지자체에 맡겨놓은 상태이므로 도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과 기초사업장 정비를 위해 자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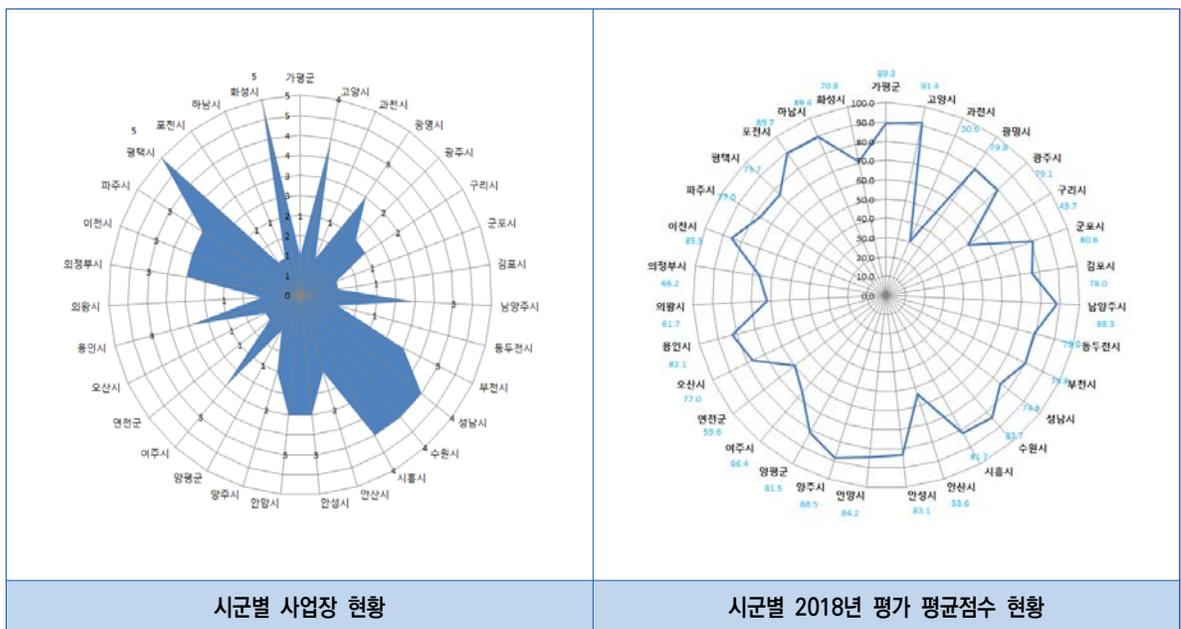
5 보건복지부(2019),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참고

6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기부식품 사업을 내실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안 강구 필요

- 경기도는 2013년 이후 푸드뱅크와 마켓을 대상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음
  - 2015년, 2017년 경기도 자체평가<sup>7</sup>결과에 따르면 인력배치 기준에 따른 전담인력의 업무를 푸드코디네이터가 업무 분장의 구분 없이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음 (경기복지재단, 2019)
    - 하위시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행정적 체계를 보완하고 종사자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음
  - 2018년도부터 기부식품 사업장 평가를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접 실시함으로써 경기도 자체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
  -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경기도는 총 75개소가 평가받았으며, 푸드뱅크는 57개소, 푸드마켓은 18개소였음

〈그림 2〉 시군별 사업장 현황 및 평가대상 현황



-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에 따라 경기도의 사업장 등급을 살펴보면 A등급은 14.7%, B등급 45.3%, C등급 17.3%, D등급 6.7%, E등급 16.0%로 나타남

7 2012년 경기복지재단의 연구과제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2013년 시범평가를 시작으로 3회에 걸친 평가를 수행하면서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을 거침

○ 그러나 경기도 사업장들의 평가 결과는 법적 기준조차 충족하고 있지 못함

- 신고기준을 포함하여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10개 항목이며 이를 모두 충족한 사업장과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으로 분류<sup>8</sup>함
  - 차량, 냉장·냉동시설 관리, 보관창고, 전담직원, 보조인력, 직원교육, 80% 이상 배분, 매주 3회 이상 배분, 매주 60인 이상 배분, 무상제공 등
- 평가를 받은 경기도 75개 사업장 중 6개소(8%)만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푸드뱅크 4개소, 푸드마켓 2개소로 나타남<sup>9</sup>
  - 경기도의 법적 기준 충족 사업장은 6개소로 전국 비율 10.2% 보다 낮게 나타남

〈표 4〉 경기도 사업장 법적 기준 충족 여부 등급별·신고유형별 현황

구 분			등 급										
			A 90점 이상		B 80점이상 ~90점미만		C 70점이상 ~80점미만		D 60점이상 ~70점미만		E 60점 미만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총계(75)			11	14.7	34	45.3	13	17.3	5	6.7	12	16.0	
법적 기준 충족 여부	충족	계(6)	4	66.7	2	33.3	0	0.0	0	0.0	0	0.0	
		푸드뱅크	전체(4)	3	75.0	1	25.0	0	0.0	0	0.0	0	0.0
			당연(2)	1	50.0	1	50.0	0	0.0	0	0.0	0	0.0
			임의(2)	2	100.0	0	0.0	0	0.0	0	0.0	0	0.0
		푸드마켓	전체(2)	1	50.0	1	50.0	0	0.0	0	0.0	0	0.0
			당연(1)	0	0.0	1	100.0	0	0.0	0	0.0	0	0.0
	임의(1)		1	100.0	0	0.0	0	0.0	0	0.0	0	0.0	
	미충족	계(69)	7	10.1	32	46.4	13	18.8	5	7.2	12	17.4	
		푸드뱅크	전체(53)	6	11.3	20	37.7	12	22.6	4	7.5	11	20.8
			당연(33)	3	9.1	18	54.5	7	21.2	2	6.1	3	9.1
			임의(20)	3	15.0	2	10.0	5	25.0	2	10.0	8	40.0
		푸드마켓	전체(16)	1	6.3	12	75.0	1	6.3	1	6.3	1	6.3
			당연(11)	0	0.0	10	90.9	0	0.0	1	9.1	0	0.0
			임의(5)	1	20.0	2	40.0	1	20.0	0	0.0	1	20.0

- 평가 결과 경기도의 전체 점수 평균은 77.2점
-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6개소는 고양시(4개소), 광주시(1개소), 시흥시(1개소)에 분포

8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2018), 「2018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결과 보고서」 참조  
 9 경기복지재단(2019), 「경기도 기부식품사업 평가결과 분석 및 발전방안」 참조

- 시·군별 지도·점검을 통해 관할 사업장의 관리까지는 어려운 형편으로 광역지원 센터와 협조하여 이에 대응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신청 접수와 사업장 관리는 시·군청의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 등에 배치되어 있으며 사회복지 사업 중에서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기에 어려운 여건임
  -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해도 주로 회계 관련 내용에 치중하고 있음

## ■ 경기도 기초사업장 지원 및 관리 방안 제안

- 보건복지부의 전국 단위 평가는 2021년도에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연되고 있음
  - 2020년 한국표준협회에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모의평가를 거쳐 평가매뉴얼과 함께 발표된 바 있음<sup>10</sup>
    - 지표는 법적기준이 신고기준, 시설/장비, 인력현황, 사무공간, 기부식품 제공 횟수 등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운영성과 영역 또한 경영관리, 위생/안전, 재정투명성과 배분 적정성 등으로 세분화됨
- 경기도는 2022년 사업장 지도·감독 점검표를 전면 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장 점검과 성과평가를 지속 실시할 예정임
  - 경기도와 광역지원센터는 방문상담이나 종사자 교육 등 멘토링 서비스와 사업장별 운영 능력과 여건을 고려한 심층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음
  - 법적 기준 준수, 기부물품 접수 및 배분 내역, 회계장부 등 집중점검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의 평가 결과와 함께 기초사업장에 제공되는 사업보조금을 지원/미지원 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평가 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고 지도·점검 내용에 부합할 수 있으며 기부식품 사업장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는 자체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의 핵심적 영역을 채택하고 광역지원센터에서의 점검 사항이 접목된 형태의 관리 방안으로 경기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10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2020), 2021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지표 개발 연구

## III 인증제도의 개요와 사례

### ■ 인증제도의 개념과 도입 근거

- 인증제도는 복지시설 경영 전반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적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인된 기관이 증명하는 것으로 정의
  -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작된 제도로, 기관의 운영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표준기준을 설정하고 현장 심사를 통해 시·도에서 기관을 공인하는 제도
  - 제도의 목적은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전체적인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교육 및 자문을 통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에 있음
    - 인증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원 및 유형 등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더 좋은 서비스 기관이 되려는 노력을 촉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 제도로 평가됨
-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경기도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보조금)의 6.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함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도지사는 제2항의 평가를 위해 시·군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함
  -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제5조(품질관리 대상)의 3. 그 밖에 서비스 품질 관리에 대하여 자진 신청하거나 도에서 품질관리를 받도록 요청한 자에 해당함
    - 도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단체의 운영의 활성화와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각호에서 정한 내용을 수행할 수 있다<sup>11</sup>.
      1.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후 경영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단체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 품질관리 대상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시설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과 단체가 포괄적으로 포함됨

11 각 호는 시설 평가사업, 평가 사후관리, 인증사업, 컨설팅, 지원 전문 인력 양성사업,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등임

- 따라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의지에 따라 시·군에 위치한 기부식품등 사업장에는 지원 지속 여부 결정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도입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푸드뱅크 및 마켓 사업장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물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시설인증의 과정을 사업장 전반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기본적으로 사업의 실적 및 성과를 측정하도록 설계된 평가와 지도·점검을 통합한 경기도 자체의 관리체계로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 인증제도 도입의 장·단점<sup>12</sup>

-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최대 장점은 전체 사업장의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서비스의 상향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것임
  - 경기도 차원의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 도와 시·군의 입장에서는 기존 사업장들에 대한 보조금의 지속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장들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계속 지원해야 하는 사업장 수 증가를 조절할 수 있음

〈표 5〉 푸드뱅크 및 마켓 인증제도 도입의 장·단점

인증제도의 장점	인증제도의 단점
전반적인 서비스 질의 향상	인증 준비에 따른 업무 가중
자격이 안 되는 곳은 도태되거나 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저항
이용자의 선택에 도움	복지관 등 체계가 있는 기관들에서 인증에 더 유리
서비스의 기본적인 표준화 가능	인증제 결과에 따른 인건비 등 보조금 축소
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 제고	지역적 특성을 모두 인증으로 담아내기 어려움
도 차원의 보조금 차등 또는 미지원 결정 근거로 활용 가능	

- 한편, 사업장 입장에서는 인증을 준비하기 위한 업무 가중과 그에 따른 저항이 있을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인건비 등 보조금 축소에 대한 우려가 클 수 있음

12 보건복지부(2014).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운영방안 연구 참고 재구성

-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서 준비되어 할 사항은 지표의 정비,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체계, 지침 등 마련이 필수적임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의 결과와 광역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및 점검의 결과 중 핵심영역을 채택하여 인증지표로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함
  - 8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행정력을 수반한 체계가 결정되어야 함
  - 사업장들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주체들 즉, 경기도와 시·군에서의 합의에 따른 지침을 우선 마련하고 이를 사업장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필요함

### ■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인증제도 적용 사례

- 사회복지 현장에 이미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으며 시설 대상, 프로그램 대상 등으로 구분함
  - 시설을 대상으로 인증을 실시하지만 지표의 내용상으로는 프로그램(사업) 운영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음
    - 서울시는 단순히 인증제를 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해 정원 및 유형 등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음
    - 서비스 품질기준의 인증지표 반영으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며 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표준적 기준설정, 기준 충족 시 인증을 부여(3년) 및 보조금 지원

〈표 6〉 국내 인증제도 도입 및 운영 사례와 시작연도

주체	데이 케어센터	노인 의료복지시설	방문 요양시설	보육시설 평가인증	의료기관 평가인증	교육시설 안전인증	주간보호 시설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	자살예방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2005년	2010년				2014년
서울시	2009년	2015년	2020년						
경기도								2010년	
부산시		2011년							
대구시						2021년			
강원도							2021년		

- 대부분의 인증 사례는 신청주의로 운영되지만 보육시설 평가인증과 같은 제도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국공립 기관뿐만 아니라 법인 등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까지 인증이 보편화되어 있음

## Ⅳ 경기도 사업장 인증 가능성은?

### ■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및 지도·점검 성과평가 결과 활용, 인증

- 시기적으로 경기도와 광역지원센터의 계획에 기초사업장 지도·감독 현장점검과 성과평가 지속 실시를 위한 점검표의 전면 개정 등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시·군별로 사업장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이용자 수에는 큰 변화가 없고 지자체의 보조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평가를 2022년으로 연기하였으며 그 결과는 하반기 또는 차년도에 공유될 예정임
  -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전국 단위 평가결과만으로 현재 까지 지자체마다 기본적인 현황제시 이외에 통제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의 공신력 있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 이러한 계획의 결과들은 비슷한 시기에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활용하여 경기도 자체적인 관리체계로서 인증제도를 도입해 볼 수 있는 적절한 기회라고 할 것임
- G-푸드드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평가와 지도·점검의 2가지가 통합·간소화된 형태의 인증제 도입 및 운영
  - 기존의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와 지도·점검 결과를 점수화 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 결정
  - 신규 신청기관들에 대해서는 3년간의 운영과 평가 후 결과가 나왔을 때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
  - 평가 결과에 따라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을 인증대상으로 설정하고 일정한 기준을 제시
  - 기존 사업장의 일정 수준 관리·유지를 독려하는 기재로서 경기도 차원의 인증을 부여 하고 보조금의 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로 작동할 수 있음
  - 신규 사업장 신고·운영을 준비하는 경우도 신고기준 이외 경기도 인증기준을 제시하여 일종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진입 제어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함

## ■ 경기도 기초푸드뱅크 및 마켓 전체 실태조사 실시

- 경기도 전체 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을 통해 운영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경기도와 시·군에서의 보조금 지원 계획수립 필요
  - 인구, 면적, 교통(접근성), 취약계층 수(행복e음시스템 활용) 등을 조사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기준으로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을 결정하는 근거로 활용
- 사업장의 수가 많은 시·군의 경우는 사업장별 결과분석을 통해 인구대비, 재정 투입대비, 인프라가 적절한지 판단하고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을 총액 결정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함

## ■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역할의 명확화·강화

- 사업안내에는 광역지원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권한 부여와 함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역할 중 중요한 영역<sup>13</sup>은 ① 광역 단위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조정·배분, ② 기초푸드뱅크·마켓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식품위생교육, 자살예방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 교육 등 ③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관리 지원 ④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홍보 ⑤ 사업계획 수립(운영위원회 포함) 및 실적 보고(관할 시·도 및 전국지원센터), ⑥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실태조사 ⑦ 광역 및 관할 기부식품 등 통계 관리 ⑧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점검 등으로 관리 역할이 매우 큼
  - 기초푸드뱅크·마켓 사업장 운영·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의무화시켜 광역과의 관계와 기능 구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있어야 함
- 광역지원센터의 업무 성과평가 시 기초사업장 관리 영역에 대해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측정하는 평가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의 전국 지원센터 평가지표에 기초사업장에 대한 관리실적을 인증관리 등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자구적 노력과 연동시키는 지표를 개발·추가할 것을 제안함

13 2021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참조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2014).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운영방안 연구』.
- 보건복지부(2021). 『2021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2020). 『2021년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평가지표 개발연구』.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2018). 『2018년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평가 결과 보고서』.
- 유정원·이석환·김혜리(2019). 『경기도 기부식품사업 평가결과 분석 및 발전방안』, 경기복지재단
- 유정원·현동길(2015). 『경기도 기부식품사업 내실화 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경기도홈페이지 <https://www.gg.go.kr>

경기복지재단 복지이슈 FOCUS 2022-02

## 경기도 G-푸드드림 사업 인증제 도입 가능성

---

발행일 2022년 3월

발행인 문정희 대표이사 직무대리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